의안번호	2209330
의 뢰 인	윤준병 의원
회 답 일	2025. 4. 9
추계번호	25F19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및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적용기한 4년 연장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Ⅰ.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4년 연장함에 따라 소득세 및 법인세는 2027년 1,133억원, 2030년 1,236억원 등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총 4,735억원(연평균 1,18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개정안에 포함된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의 경우 자료의 부재로 추계가 곤란함에 따라 동 비용추계는 추계가 불가능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소득세 및 법인세, 2027~2030년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한 4년 연장 (안 제25조의6)	−1,133	−1,166	−1,201	−1,236	−4,735	−1,184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한 4년 연장 (안 제25조의7)	추 정 곤 란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5조의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세액공제 적용기한 4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5. 12. 31. → (개정) 2029. 12. 31.	
2	안 제25조의7 (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 내국법인의 문화산업 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적용기한 4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5. 12. 31. → (개정) 2029. 12. 31.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1	안 제25조의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2	안 제25조의7 (내국법인의 문화산업 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	○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부칙에 따라 개정안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현행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감안하여, 세수효과는 2027년부터 발생할 것으로 가정

○ 현행 제도의 세액공제 적용기한(2025.12.31.)을 고려 시 적용기한 연장으로 인한 2026~2028년 귀속분에 대한 법인세 신고는 2027~2030년에 신고됨에 따라 세수효과는 2027~2030년에 발생한다고 가정

❑ 향후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에 따라 추계

○ 향후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2024년 실적을 기준으로 최근 5년(2017~2022년)간 영상콘텐츠 제작비의 연평균 증가율(3.0%)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가정

– 2024년 지출분부터 공제율이 변경[1]된 점을 감안하여, 과거 감면실적을 현행 공제율 기준으로 환산하여 활용

○ 향후 제작되는 모든 콘텐츠가 추가공제율 적용을 받을 것으로 가정

– 추가공제율 적용 여부는 개별 작품별로 국내 제작비 비율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2],

1) (2017~2023년) 기본공제율(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 (2024년 이후) 기본공제율(대 5%, 중견 10%, 중소 15%) + 추가공제율 신설(대·중견 10%, 중소 15%)

동 추계는 모든 콘텐츠가 추가공제율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고 가정

❑ 향후 영상콘텐츠 세액공제를 받는 업체에 충분한 이익이 발생하여 공제율 상향조정에 따라 증가하는 세액공제를 모두 감면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며, 최저한세는 고려하지 않음

❑ 세액공제율 변화에 따른 행태변화는 고려하지 않음

○ 세액공제율 변화에 따라 영상콘텐츠 제작에 대한 행태가 달라질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동 추계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음

❑ 또한 개정안에 포함된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 확대 및 기한 연장 시 법인세수의 감소가 예상되나 현재 세액공제 실적이 없어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의 합리적인 추계가 곤란함

○ 동 조항은 2024년 이후 출자분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되어 2024년 귀속분에 대한 법인세 신고는 2025년에 신고됨에 따라 공제실적이 아직 발생하지 않음

3. 상세 추계내역

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안 제25조의6)

(1) 제도 개요 및 관련 실적

❑ (제도개요) 동 제도는 영상산업의 지원을 위해 2017년 도입되었으며, 세액공제 대상 및 공제율 등을 중심으로 제도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세제지원이 확대되는 추세

○ 2017년 도입 이후 공제대상 확대, 공제율 상승 등을 중심으로 제도 개정

– 현행 기업규모별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공제율은 추가공제율 포함 15~30% 수준

※ 공제율(기본+추가): 중소기업 30%, 중견기업 20%, 대기업 15%

---

2) 국내 제작비 비율이 80% 이상이며, 4개 요건* 중 3개 이상 충족 시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10 제4항)

* ① 주요 스태프 인건비의 내국인 지급비율 80% 이상, ② 배우 출연료의 내국인 지급비율 80% 이상, ③ 후반제작비용 중 국내 지출 80% 이상, ④ 주요 IP(방송권, 전송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작성권 등) 3개 이상 보유

[표 2]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의 주요 연혁

시행시기	주요 개정내용
2017년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 - 공제대상: 국내에서 발생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 공제율: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3%
2022년	□ 공제대상에 해외에서 발생한 제작비용도 포함 - 공제대상: 국내에서 발생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 국내외에서 발생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2024년	□ 공제율 상향 및 추가공제 도입 - 공제율: (기본공제) 중소기업 10 →15%, 중견기업 7→10%, 대기업 3→5% (추가공제) 국내 제작비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이면 추가공제 10%(중소기업 15%) 적용

❑ (감면실적)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실적은 2020년 99억원에서 2024년 257억원(잠정치)으로 증가함

○ 단, 2024년 실적은 2023년 세법개정으로 인한 기본공제율 상향 및 추가공제 도입의 효과가 반영되기 이전의 실적

[표 3]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실적: 2020~2024년

(단위: 억원)

	2020	2021	2022	2023	2024(잠정)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99	170	309	320	257

자료: 정부의 「조세지출예산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추계방법

❑ (영상콘텐츠 제작비 현황) 영화·방송·애니메이션 등에 대한 전체 제작비 규모는 2017년부터 2.7조원 수준에서 2022년 3.1조원까지 증가

○ 2020~2021년 제작비 규모의 감소는 코로나19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따라 관련 산업이 위축된 영향으로 판단

[표 4] 영상콘텐츠 제작비 현황: 2017~2022년

(단위: 억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17~'22 연평균 증감률
영화	4,582	4,986	5,502	2,988	2,423	5,288	2.9
방송[1)]	21,210	23,210	23,899	22,338	23,509	25,034	3.4
애니메이션[2)]	1,276	454	725	1,510	1,132	994	−4.9
계	27,068	28,649	30,126	26,836	27,063	31.316	3.0

주: 1) 지상파방송·방송채널사용사업·지상파DMB·종합유선·위성방송·위성DMB·IPTV 방송의 제작비
2) 애니메이션 제작비용이 2023년 이후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조사항목에서 제외되어 제작비용 정보를 알 수 없어 영상콘텐츠 제작비 현황 자료의 최근 자료 부재

자료: 영화산업진흥원 「한국영화산업 결산」,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계포털」,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 통계조사」를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24년 실적을 현행 공제율로 환산) 국세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공제액의 기업규모별 비중을 적용하여 2024년 실적을 기업규모별로 안분하고 현행 공제율로 환산하여 적용

○ 최근 3년(2020~2022년)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액 기업규모별 연평균 비중은 다음과 같음

- 대기업 53.8%, 중견기업 25.4%, 중소기업 20.9%

○ 2024년 귀속분부터 세액공제율이 변경된 점을 고려하기 위해, 과거의 감면 실적을 현행 공제율 기준으로 환산

- 대기업: 3→15%, 중견기업 7→20%, 중소기업 10→30%

[표 5] 영상콘텐츠 세액공제액 기업규모별 안분: 2024년 잠정실적

(단위: 억원)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계
공제액	138	65	54	257
현행 기준 환산액	691	186	161	1,038

❑ (향후 공제액 추정) 향후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2024년 잠정실적이 최근 5년간 콘텐츠 제작비용의 연평균 증가율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 최근 5년(2017~2022년)간 콘텐츠 제작비용 연평균 증가율: 3.0%

[표 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 감소효과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2031
세수 감소효과 추정치	1,133	1,166	1,201	1,236	1,273

(3) 추계결과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4년 연장함에 따라 소득세 및 법인세는 2027년 1,133억원, 2030년 1,236억원 등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총 4,735억원(연평균 1,18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7]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소득세 및 법인세, 2027~2030년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한 4년 연장 (안 제25조의6)	−1,133	−1,166	−1,201	−1,236	−4,735	−1,184

나.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안 제25조의7)

❑ 현행법 제25조의7은 문화산업전문회사[3]에 출자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영상콘텐츠에 출자하는 경우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액 중 영상콘텐츠 제작에 사용된 비용에 대해 3%를 법인세에서 공제

○ 동 조항은 2023년 말 신설되어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자하는 경우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하는 경우에 적용됨

3) 문화산업 분야의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설립하는 특수목적회사(SPC, Special Purpose Company)로 사업장과 직원이 없이 서류로만 존재하는 명목상의 회사, 일명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다. 통상적으로 프로젝트 개시와 함께 출범하여 프로젝트 완성과 동시에 해산하며 프로젝트의 수익을 투자자, 사원 또는 주주에게 배분하는 형태다.

[표 8]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7에 따른 세액공제 제도

개요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를 통해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적용대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공제대상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액 중 영상콘텐츠 제작에 사용된 비용 -영상콘텐츠: 영화, TV프로그램, OTT콘텐츠 -제외비용: 접대비, 광고홍보비, 인건비 중 퇴직급여충당금 등
공제시기	영상콘텐츠의 최초 방송·상영 또는 제공일과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청산일 중 빠른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적용기한	2024.1.1. 이후 출자하는 분부터 2025.12.31.까지 출자한 경우

❑ 개정안에 따라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 확대 및 기한 연장 시 법인세수의 감소가 예상되나 현재 세액공제 실적이 없어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의 합리적인 추계가 곤란

○ 동 조항은 2024년 이후 출자분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되어 2024년 귀속분에 대한 법인세 신고는 2025년에 신고됨에 따라 공제실적이 아직 발생하지 않음

○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서도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액 중 영상콘텐츠 제작에 사용된 금액을 사전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대한 2025년 감면실적이 추정곤란으로 제시됨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수입 감소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Ⅳ. 부대의견

❑ 없음

Ⅴ.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2과	신미정	백경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신미정	02-6788-4837	mjshin@assembly.go.kr